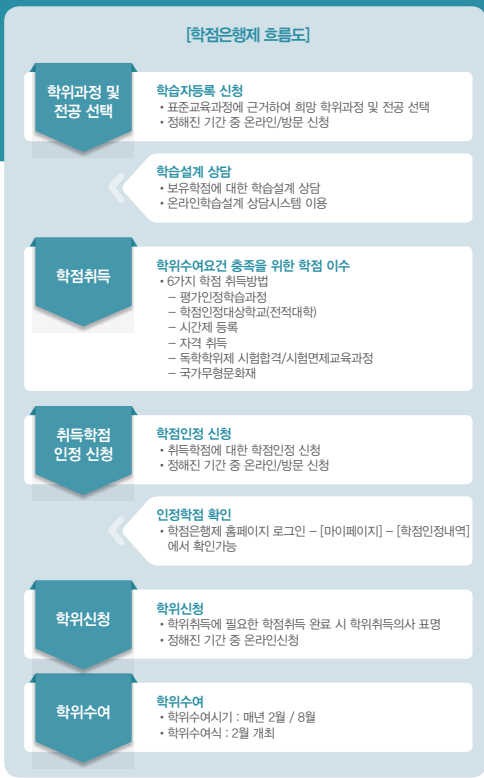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수여까지

01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9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본 제도는 오른쪽 '학점은행제 흐름도'와 같이 진행됩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의 입학제가 아닌 「등록 · 신청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수한 학점에 대한 등록 · 학점인정 및 최종 학위 취득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는 학습자가 정해진 기간에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 위 흐름도는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취득 목적으로 진행할 경우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02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 안내

법규명	비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15. 03. 27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09. 28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 12. 31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2015. 10. 20 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2016. 01. 06 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2016. 01. 06 제정

03 학위종류 및 학위수여 요건

- 학위종류
- 학사학위 : 4년제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
 - 전문학사학위 :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
 - 타전공학위 :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과정으로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⑥ 해당 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⑦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❶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전공 48학점 이상	전공 36학점 이상	전공 42학점 이상

1.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 교육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함.

2. 학점취득방법 6가지(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국가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 국가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이전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3.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4.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야 함.

5.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수여 가능함.

6. 학사학위소지자는 학사 타전공 또는 전문학사 타전공,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는 전문학사 타전공 진행이 가능함.

04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❶ **학습자등록 신청** : 처음 학점인정 신청 시 또는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절차로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됨(학점 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하나,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에 등록해야 함).

❷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은행제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❸ 시기와 방법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신청		'16.12.15 ~ '17.01.31 (② 12.15 ~ 1.16)	4. 3 ~ 4. 28	6. 15 ~ 7. 31 (⑧ 6.15 ~ 7.17)	10. 2 ~ 10. 31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각 분기 중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1. 3 ~ 1. 16	4. 3 ~ 4. 11	7. 4 ~ 7. 17	10. 10 ~ 10. 18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각 분기 중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방문신청은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함(토·일, 공휴일 제외).
-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 ②-2월 학위수여대상자 / ⑧-8월 학위수여대상자
- ※ 신청접수일정은 토·일,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신청 분기 이전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일정 확인요함.
- ※ 온라인신청 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해야 함.
- ※ 교육훈련기관 : 홈페이지 상단 [교육기관 정보-교육기관 검색]에서 조회 가능함.

❹ 신청 종류별 제출서류

신청 종류	제출서류		수수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학습자 등록	• 학습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신분증 • 최종학력증명서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 최종학력명서 1부 (고등학교졸업정보 확인 가능자 및 온라인증명서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제출 면제)	4,000원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해(자격)증명서] 원본 제출 (단, 방문 접수자의 경우 면허증 원본 지참하여 방문 시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만 가능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경우 최종학력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함. – 고등학교 학력 : 학력인정증명서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 통일부장관이 학력인정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 (학교명 및 졸업일 등이 기재된 공문의 불임자료 포함)		
학점인정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 취득 증빙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출력본 •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본 • 학점 취득 증빙서류	1학점 당 1,000원

- ※ 별지서식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서식임.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해야 함.
(신청학점에 따라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기별 접수계획을 통해 확인요함)
- ※ 수수료 납부
 - 방문 신청 : 현금, 카드 결제 가능함(단, 시·도교육청 방문접수는 카드 결제 불가).
 - 온라인 신청 : 실시간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결제 가능함.

❶ 학점인정 신청 시 학점원별 증빙서류

신청학점	별지서식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정	별지 제6호 서식	증빙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별지 제7호 서식	성적증명서 1부, 제적 또는 졸업증명서 1부
시간제등록	별지 제8호 서식	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9호 서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별지 제10호 서식	시험합격 : 증빙서류 없음.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성적입력이 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국가무형문화재	별지 제11호 서식	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 조교증서 사본(원본지참) ※ 관련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이수자 :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620번 : “국가무형문화재” 탑재 온라인 접수 시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는 제출서류 없음. (단, 전수생은 전수교육확인서 제출요함)

- ※ 별지서식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한 서식임.
- ※ 일부 자격은 증빙(제출)서류 없음(매 분기 공지되는 접수계획 참고).

❷ 기타 신청 종류 내용 및 방법

신청 종류	내용	신청방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완료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온라인
학위 및 전공변경	진행 중인 학위 및 전공을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온라인
학위연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온라인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표준교육과정 「전공교양호환과목」에 한함)	온라인
재심신청	학점인정신청 후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재심신청서”,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이상의 날인)”제출)	방문

05 학위신청 및 학위수여

❶ 학위신청 :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해야 함.

❷ 학위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2월 학위신청 (전기 학위수여)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 학위신청 (후기 학위수여)	6월 15일 ~ 7월 15일

-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에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함.
- ※ 전기 학위신청자는 4분기(10월), 후기 학위신청자는 2분기(4월)에는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 신청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각 신청 분기의 접수계획 확인요망

❸ 학위수여 : 매년 2월(전기)과 8월(후기) 두 번의 학위수여가 이루어짐.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전기)에 한번만 개최됨.

- ※ 학위수여 후 학습자의 개인 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함.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❹ 학점은행제 학위의 법률적 효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학점은행제에 의해 취득한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함. 즉,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법률에 따라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가능함.

* 본 자료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이후의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릿 PDF파일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간행물

*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콘텐츠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제도 이용 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